

蘇, 「知的財産權」보호 西方과 비슷 발명·디자인·개량 등 기본규정「民法」에 명시

訪韓증인 유리 베스팔로프 蘇聯특허청장이 14일 서울 무역협회강당에서 국내 기업체 및 연구소 임직원 1백 50여명을 상대로 「蘇聯의 산업재산권제도 및 기술이전」에 관한 설명회를 가졌다. 베스팔로프 특허청장이 밝힌 蘇聯의 산업재산권 제도 및 발전경향을 소개한다.

蘇, 「知的財産權」보호 西方과 비슷

발명·디자인·개량 등 기본규정「民法」에 명시

蘇聯에서 법적 보호를 받는 산업재산권 대상은 외국에서 와 마찬가지로 발명·산업디자인·상표등이 포함된다.

발견이나 개량 등 분야는 그동안 완전히 보호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설명된바 없었기 때문에 외국에서만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돼왔다. 그러나 발견·발명·산업 디자인·개량 등 산업재산권 분야의 법적 보호에 대한 기본규정이 「蘇聯 연방공화국 民法원칙」에 명시돼 있다.

蘇聯은 지금 경제성장과 시장경제도입의 가속화, 선진경제 대국의 상호 간섭이 따른

산업재산권의 효율적 보호를 위해 새로운 법률을 필요로 하고 있다.

蘇聯연방최고 소비에트위원회에서 현재 발명가의 활동, 산업디자인, 상표에 대한 기초법안이 검토되고 있다. 발명가의 활동에 대해 이 법안은 현행 법률이 15년간 발명의 법적 보호를 인정해 주던 것을 출원일로부터 20년동안으로 상향조정할 것이 기대된다.

발명의 상업화 촉진책으로 발명의 사용에서 얻는 이익에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등 경제적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발명 관련 기술의 신속하고도 융통성 있는 재정지원을 보장하도록 발명의 상업적 이용에 드는 고유비용의 예산 지출뿐만 아니라 발명가의 활동을 지원하는 지역금융펀드 등의 설립도 고려하고 있다.

발명권자에게는 특허유효기간동안 발명의 사용에 대한 보상책도 마련 중이다. 보상액 수는 당사자들이 정하도록 하며 한도는 제한받지 않도록 조치가 있을 것이다.(현행 2% 미만)

산업디자인의 경우 이법안은 개발 및 이용의 모든 단계에서 산업디자인의 사용권에

대해 팔리거나 면허를 줄수 있고 면허협약 당사자들은 상호 의무와 책임을 가지며 산업디자인 저작가는 적절한 보상을 갖게 되는 상업적 원리에 의해 보호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정부는 산업디자인을 개발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 이의 사용으로 얻는 이익의 조세감면 형태로 인센티브 제도를 채택할 예정이다. 산업디자인 저작가나 특허권자는 蘇聯연방 특허 재판소를 통해 필요 한 보호를 받게 될 것이 기대된다.

상표의 경우 현행 법률은 상표권자에 유용한 독점적 권리의 개념과 이를 권리의 침해로 해석될 수 있는 제3자의 행동에 대한 리스트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고 있다.

발명 활동 및 산업디자인·상표권에 대한 기초법안은 산업재산권제도의 국제규격화는 물론 蘇聯기구들의 경제적 활동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법적·절차적 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보인다.<이 글은 중앙경제신문 李泰鍾 기자의 글을 옮겨온 것임>

